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2.10.5(금) 10:00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1. 제 안 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고령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대행업체 평가결과 계량화, 투명성 등 평가원칙 규정(안 제3조)
-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및 평가대상 규정(안 제5조)
- 대행업체 평가방법, 범위, 시기 등 평가계획 수립(안 제7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안 제12조)
-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평가 조치사항 규정(안 제19조)

4.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총 4장에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 에는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하기 위한 평가 사항과,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보건·위생, 복지대책 등 공공 서비스 대행업체의 평가항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 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 수립과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사항과 현장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8조 내지 안 제20조 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객관적 운영과 청소행정 서비스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규정된 사항으로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가 공개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